

判例 및 審査決定例

地方稅關聯 大法院 判例

1. 2001.2.30. 선고 2000다58088판결 [부당이득금]

-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 [2]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종합토지세=한정적극, 도시계획세=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되,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되고,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주 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금 39,766,140원과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금 508,740원에 상당하는 배당액 부분과 각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표의 실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가사 원고가 받아야 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당표의 확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조 제2항 제1호(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가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과)목 및 (거)목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

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과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9호, 제5조 제1항 제9호, 제10조 제4항, 제5항, 교육세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0. 9. 8. 선고 99두 276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그 가산세와 가산금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고 잘못 배당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데에는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주체를 달리 하는 위 세금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종합토지세 등의 당해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면서, 괄호 안에 단서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의4는 종합토지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행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계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1999. 3. 18. 선고 96다 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는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 가액의 1,000분의 2를 부과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는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금 39,766,140원과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 금 508,740원에 상당하는 배당액 부분과 각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01.2.23. 선고 2000다68924판결 [부당이득금]

[1] 납세자 아닌 제3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소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

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도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함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도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함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소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6개 회사는 공동으로 1995. 12.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대전고·지검 청사에 관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25,768,862,000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50일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액 23억 9,200만원, 착공일 1995. 12. 3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0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 6개 회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제2호증, 이하 ‘공동협정서’라고 한다.)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공동협정서는 원고 등 6개 회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출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고 등 6개 회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하며,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를 대표하고,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원고 32%, ○○건설 15%, 주식회사 △△상사 15%, △○건설산업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주택 15%, ××건설 주식회사 8%로 정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공동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3) 원고 등 6개 회사는 1차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사이에 1996년경 계약금액 60억 9,380만원의 2차 계약을, 1996. 12. 24. 경 계약금액 6억 7,300만원, 착공일 같은 달 26일, 준공일 같은 달 31일로 하는 3차 계약을, 1997. 6. 10경 계약금액 48억 3,450만원, 착공일 같은 달 11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로 하는 4차 계약을, 같은 해 12월 27일경 계약금액 27억 3,800만원, 착공일 같은 달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터 180일로 하는 5차 계약을, 1998. 3. 5경 계약금액 29억 9,700만원, 착공일 같은 달 9일, 준공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하는 6차 계약을, 같은 해 6월 19일경 계약금액 6,818,188,000원, 착공일 같은 달 24일, 준공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하는 7차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원고 등 6개 회사는 4, 5차 계약에 따라 일부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설이 1998. 3. 5경 부도가 나 1997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은 ○○건설의 지분비율에 따라 1998. 3. 26경 4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중 234,541,700원, 같은 해 4월경 5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채권 중 1,953만원, 합계 253,541,700원(234,011,700원 + 19,530,000원)을 압류한 후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5) 한편, ○○건설이 1998. 3. 5경 부도 처리되자, 원고 등 6개 회사는 같은 해 4월 20일경 피고에게 ○○건설의 부도로 인한 시공포기 의사에 따라 원고가 ○○건설의 처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공사계약 변경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건설의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은 47%로 증가하였고, ○○건설의 처분은 전부 소멸하게 되었다.

나. 판 단

위와 같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와 그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고 등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그를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및 노무를 출자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서, 그 후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이 그 조합의 구성원인 ○○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등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253,541,7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253,541,70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 6개 회사에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합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루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判例 및 審査決定例

地方稅關聯 行政自治部 審査決定例

1. 2001 . 6. 25. 제2001-306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공장 확장이전을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사용하다가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동일건물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고, 불필요한 기존 공장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 5. 25.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이 1999. 10. 5. 경기도 고양시 △△구 ○○동 1142-2번지 아파트형 공장 301호(토지 78.14㎡, 건물 559.88㎡, 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1년 이내인 2000. 9. 27.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정대상 및 등록세 중과대상(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474,20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80,960원, 농어촌특별세 1,043,230원, 등록세 51,214,350원, 교육세 9,389,290원, 합계 73,027,8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9.과 2001.1.9.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1999. 6.12.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매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입주하여 1년 이상 휴대전화기 부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체(삼성, 현대전자, LG텔레콤 등)에 공급해 왔으나, 생산능력(월 50만개)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404호, 405호, 406호)을 매입하여 생산설비를 확충(월 생산능력 150만개)하기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둘째,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 중과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도 중과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한 법령의 취지를 보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 입주하여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는 그 이후에 매각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

138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와 제102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지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32300)의 경우에는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1999. 5. 25.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1999. 10. 5.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등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공장용에 사용하다가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 9. 27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정대상 및 등록세 중과대상(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12.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매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입주하여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공장에 사용해 왔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3누14875, 1994. 4. 26)인데, 청구인의 경우 1999. 6. 12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매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입주하여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공장용에 사용해 왔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404호, 405호, 406호)을 취득한 후 불필요한 이 사

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여 차입금(이 사건 공장 매입시 융자받은 금액) 등을 상환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해 공장을 매각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1. 6. 25. 제2001-254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아파트를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24시간 돌보아야 할 아동들이 있어 부득이 낮·밤 구분없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그중 일부는 자녀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경정으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8. 30.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 △△동 1886-4번지 □□(아) 211-101호 건축물 134.91㎡(전용면적)와 그 부속토지 127.20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녀 1명과 함께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1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0,000원, 등록세 3,450,000원, 교육세 690,000원, 합계 6,670,000원을 2001.1.12.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

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유아부터 12세까지의 취학아동을 지도하고 있고,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들이 있어 딸(12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모자가정)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딸 1명(초등학교 5학년)을 두고 있는 모자가정의 세대주로서 1999.8.30.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

트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0.4.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딸(12세)과 함께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들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주거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2000.1.3. 이후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2명 내지 6명)들이 있어 부득이 낮·밤 구분없이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침실(11.88㎡)의 경우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전체 침실면적 중 주거용에 공여되는 면적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취득

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新刊 紹介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신국판 / 151쪽 / 정가 10,000원

우리 나라는 고객주의(Civicism)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하였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고, 셋째, 정부 개혁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는 민간부문에서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정신을 공공부문에 원용하여 국민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정신 하에 도입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우리 나라에 발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산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책자가 중앙행정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구입문의 : 한국행정DB센터 www.admindb.co.kr